후원방문판매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 부과

정부는 2012. 2. 17. 당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신방문판매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i) 다단계판매의 요건 중 '소비자' 요건 및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하여 유사 다단계판매업체들을 다단계판매업체로 규율하고, (ii)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정의하고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iii)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변종 영업형태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유형들을 금지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방문판매법은 2012. 8. 18.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2013. 8. 17.까지 등록을 유예하였고 따라서 현재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새롭게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만약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의 마감시한이 약 3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무법인 세종의 방문판매팀은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념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모두 갖추되, 1단계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형태를 말합니다.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이란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판매원 자신 및 그 직하위 판매원 이외의 자의 실적에 연동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등록 주체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이때 본사 직영인 대리점 등은 본사와 동일한 조직이므로 본사만 등록하면 별도의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본사 직영이 아닌 지역본부, 대리점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 판매원을 모집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소속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본사와 별도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사와 별도로 독립 대리점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 본사가 독립 대리점을 대리하여 지역별로 묶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본사는 대리점으로부터 등록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사항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 등록신청서, (ii)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iii)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iv)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v)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업무일과 휴무일 기재), (vi) 방문판매법 제14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 (ii)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는 2013. 8. 17.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등록신청시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서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자료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가 면제되는데(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은 판매원이 아닌 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판매가격의 합계액으로서, 판매원의 자가소비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70%는 1년 단위로 입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기간과 관련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3대 규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후원수당 총액 제한, 상품가격 상한 제한)의 적용 제외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판매비중 관련 자료(계약서, 영수증,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전망 및 유의할 점

금번 8. 17.까지 이행해야 하는 후원방문판매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후원방문판매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판매방식이 과연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방식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2. 8. 18.부터 시행 중인 개정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의 요건 중 '소비자'요건 및 '소매이익'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기존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되지 않았던 업체들이 상당수 다단계판매업체 내지 후원방문판매업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원방문판매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들의 판매방식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내지 미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 내지 후원방문판매업체에 해당하게 될 경우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에 따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관련된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후원방문판매 등록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는 가능하면 현재의 영업방식 및 판매조직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개정 방문판매법에 부합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철 변호사 TEL. 02 316 4629 E-Mail. ycyim@shinkim.com
- 백대용 변호사 TEL. 02 316 4630 E-Mail. dybaek@shinkim.com
- 석근배 변호사 TEL. 02 316 4640 E-Mail. gbseok@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EL. 02 316 1637 E-Mail. hjeahn@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